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 . . .<br>(제 회) |      |

## 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br>(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정부 지원 중복 수혜를 위한 의도적인 폐·창업 방지라는 규정의 취지와 신속한 재창업 유도라는 정책 목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창업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37호,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된 이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21293호, 2025.12.30. 공포, 2026.7.1. 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1)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 1) 창업 제외사유 해소를 규정한 제2조제2항의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중복 규정 삭제(안 제27조제1항)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유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정비 하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법 제52조제1항”으로,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를 “지역창업전담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창업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으로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br>-----<br>-----<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으로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br>-----<br>-----<br>-----<br>--.               |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가. ----- 1<br>년 -----<br>-----<br>-----<br>-----         |
| 나. (생략)                                                                                                         | 나. (현행과 같음)                                              |
| 4. ~ 6. (생략)                                                                                                    | 4.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 -----<br>-----<br>-----.             |
|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삭제>                        |
| 1. 공공기관                                                                                             |                                                  |
|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                                                  |
|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① ----- 법 제52조제1항----- 지역창업전담기관을 -----<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 ③ ----- 제2항-----<br>-----<br>-----               |

|                             |                 |
|-----------------------------|-----------------|
|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br>정하여 고시한다. | -----<br>-----.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
|---------------|------------------|
| 연 락 처         | (044) 204 - 7622 |